

의안번호	제963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5년 4월 21일

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963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1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~제4조)
- 직무수행의 지휘·감독 및 한계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-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~제8조)
- 비밀엄수 의무, 고충 처리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(안 제9조~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별도추진(의회운영전문위원실)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책지원관에 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정책지원관”이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
제3조(배치) ① 충청북도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,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.

제4조(직무)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광역사무에 한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, 예산·결산 심의,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작성·수집·분석 및 지원
2. 충청북도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5분 자유발언,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,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기타 의정활동 지원

제5조(지휘·감독) 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하여는
의원의 지휘·감독에 따른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여부는
소속 부서장의 지휘·감독에 따른다.

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
지휘·감독에 따른다.

제6조(직무수행의 한계) ① 정책지원관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선거법」
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
직무를 수행해야 한다.

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지원관에게 직
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.

1.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2.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3. 의원 개인의 지역구 및 정당활동, 업적 홍보 등 사적인 사무가 포함
된 사항

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
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근무성적평정) ① 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
성적을 평정하여 연봉의 책정과 근무기간의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, 직무수행능
력 및 직무수행태도,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.

제8조(교육훈련)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
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등 참여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
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엄수 의무)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
누설해서는 안 된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(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)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1조(고충 처리 지원)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임기제공무원: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

1의2. 전문임기제공무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

가. 정책결정의 보좌업무

나.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: 6급 이하
2. 시·군·구의 경우: 7급 이하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제19조(사무처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

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에서 정한다.

제29조(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.